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기획경제위원회 홍국표 의원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홍국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병가라는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노동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3년부터 사업명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변경하고 ‘유급병가 지원’과 병기하여 운영해오고 있어 조례상 명칭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 치료 또는 검진에 대한 한시적 지원의 부칙 적용 기간이 2022.12.31.자로 종료되어 관련 조문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노동 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유급병가 지원’을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변경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 치료 또는 검진에 대한 한시적 지원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